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업무편람



한국연구산업협회

KOREA R&D INDUSTRY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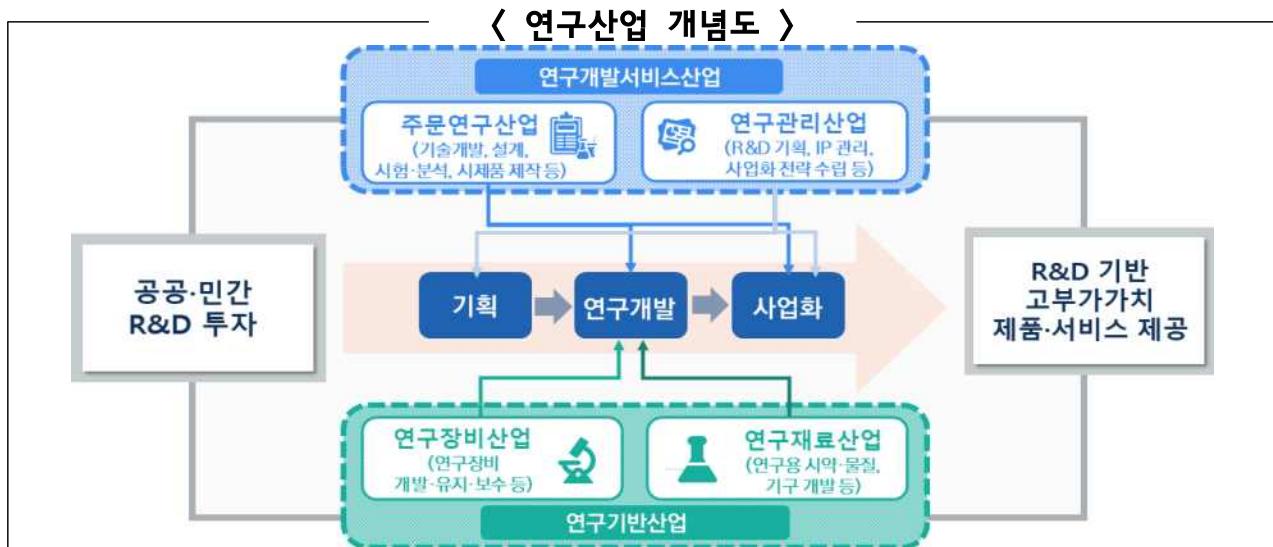
Contents

I . 연구산업 개요	1
II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2
III . 신고요건	4
1. 업종별 신고요건	4
2. 전문인력 기준	5
3. 연구시설 기준	5
4. 신고업종 매출액 기준	5
IV . 신고절차	6
V . 사후관리	8
1. 변경신고	8
2. 갱신신고	9
3. 과태료	10
부록	11
1. 연구산업진흥법	12
2.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17
3.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6
4.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식	28

I. 연구산업 개요

□ 연구산업 육성 추진배경

-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국가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더해 관련 분야들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육성 필요
⇒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연구개발서비스 제공, 연구장비·재료 개발·제공 등을 통해 R&D 활동을 지원하는 R&D 연동산업”



□ 연구산업 분야

-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서비스 유형) 시험·검사 및 분석, 설계·해석, SW·솔루션 개발, 시제품 제작 등
-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서비스 유형) R&D 사업·과제 기획, 기술이전·거래 지원, IP 취득·관리·활용 지원 등
-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서비스 유형) 광학/전자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물리적측정장비 등
- (연구재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서비스 유형) 연구용 유기·무기·바이오 물질(시약 포함), 연구용 기구 및 소모성 자재 등

II.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 제도취지

- 연구산업은 국가 R&D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R&D 기반산업으로 연구산업기업이 연구에만 몰입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효율성 향상과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역량 있는 전문연구사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연구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현황〉

구분	2007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문연구	335	89	70	103	105	110	164	237	56
연구관리	309	58	50	72	125	93	95	49	27
연구장비	–	–	–	–	–	–	–	–	1
연구재료	–	–	–	–	–	–	–	–	–

□ 법적근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신고주체

-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신고절차

-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 접수(regist.rndia.or.kr)

- 先설립 後신고

□ 운영기관

- 연구산업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한국연구산업협회가 위탁 수행

□ 연구산업 구분

구 분	세부 업종
주문연구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
	융합 연구개발업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연구관리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 지원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장비	연구실 안전관리업
	광학/전자영상장비 개발업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개발업
	물리적측정장비 개발업
연구재료	기타연구장비 개발업
	연구장비 유지·보수업
	연구용 물질·시약 개발업
	연구용 기구 개발업
	기타연구재료 개발업

III. 신고요건

1. 업종별 신고요건

- 업종별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및 매출액 요건이 다르며 동일 업종 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연구산업 업종별 신고요건〉

업종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매출액 요건	예 외
주문 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상시 확보	연구시설 보유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30%이상	단, “시험·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상시 확보 물적 및 매출액 요건은 좌동
연구 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상시 확보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30%이상	—
연구 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상시 확보	연구사업자가 개발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의 납품실적이 연 3건 이상		단,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상시 확보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이 연 3건 이상
연구 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상시 확보	연구사업자가 개발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의 납품실적이 연 3건 이상		—
비고	※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됨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			

2. 전문이력 기준

-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연구관리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연구관리업만 해당)

3. 연구시설 기준

-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또는 「주택법」제2조제1호¹⁾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공간은 제외)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갖출 것

4. 신고업종 매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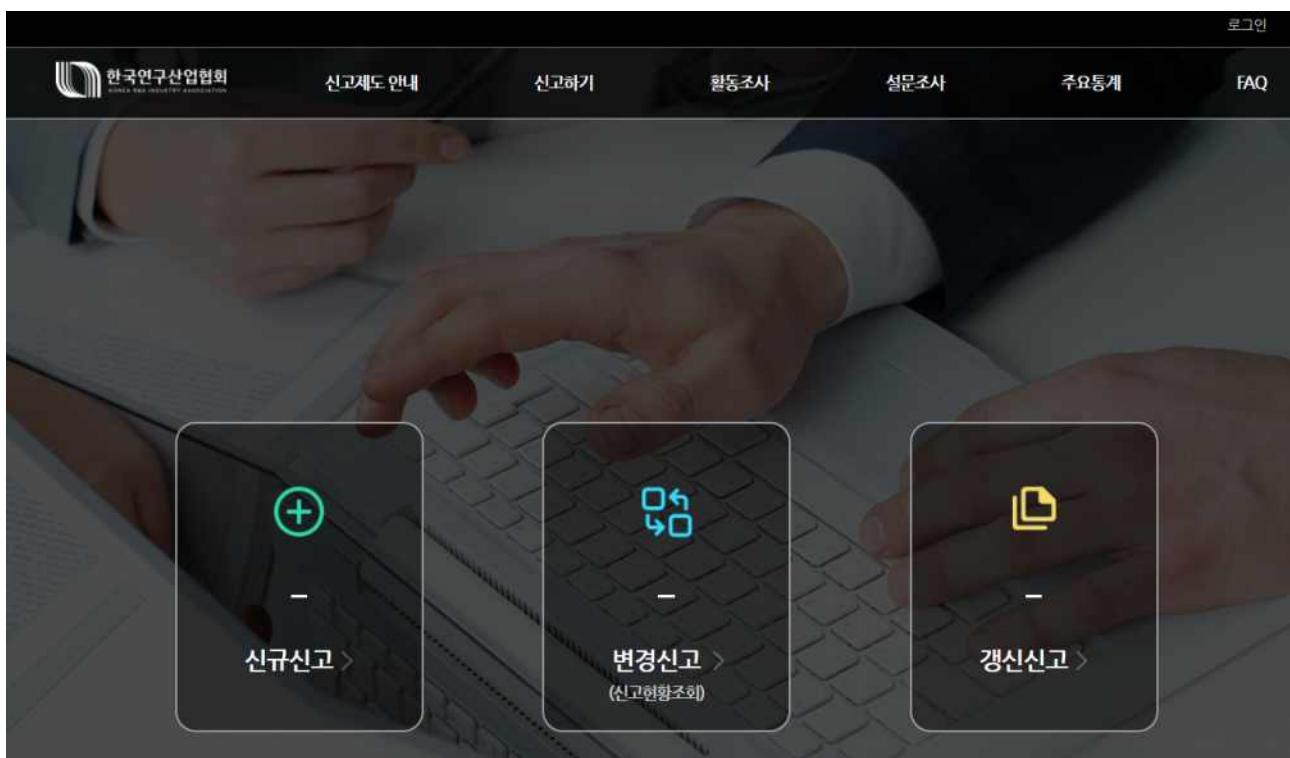
업종	총 매출액 기준 신고업종 분야의 매출액 비중		
주문 연구	30% 이상		
연구 관리	30% 이상		
비고	신고일 당시 창업 후 1년 미만인 신규 연구사업자의 경우 계약서 등 발생할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업종	개발 실적(신고시점까지 총 실적)	유지보수 실적	납품 실적
연구 장비	1개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 제외)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 제외)
연구 재료	1개 이상	—	연 3건 이상
비고	신고일 당시 창업 후 1년 미만인 신규 연구사업자의 경우 개발이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계약서 등 발생할 납품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단,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계약서 등 발생할 유지·보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IV. 신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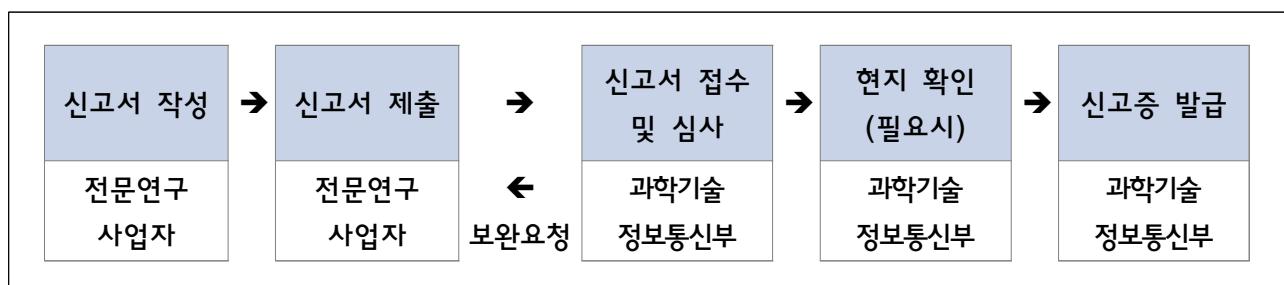
□ 신고방법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관리시스템(regist.rndia.or.kr)에서 신청



□ 신고절차 및 소요기간

-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보완요청기간 불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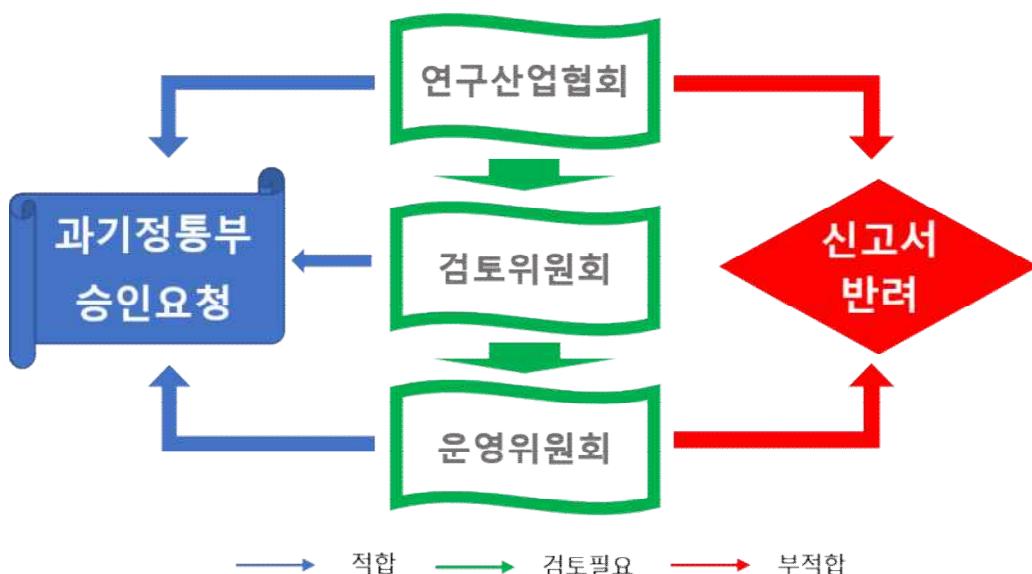
□ 제출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① 신고서(별지 제1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 개요(별지 제2호)	—
③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전문인력 재직 증명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④ 연구기자재 명세서(별지 제4호)	연구기자재 증빙 사진(주문연구만 해당)
⑤ 사업 명세서(별지 제5호)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매출장, 연구산업 매출 및 실적 증빙 계약서(협약서) 연구장비·재료 자체 개발 입증서류 (지자권,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 등) (연구장비·연구재료에 한함)

□ 연구장비/연구재료 업종 신고절차

- 연구장비/연구재료의 자체개발이 특허권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업체 제외, 3인의 검토위원회를 구성, 검토위원회에서 신고 적합성 판정
 - 검토위원회 의견 불일치시 운영위원회에서 신고 적합성 판정

〈연구장비/연구재료 신고요건 프로세스〉



V. 사후관리

1.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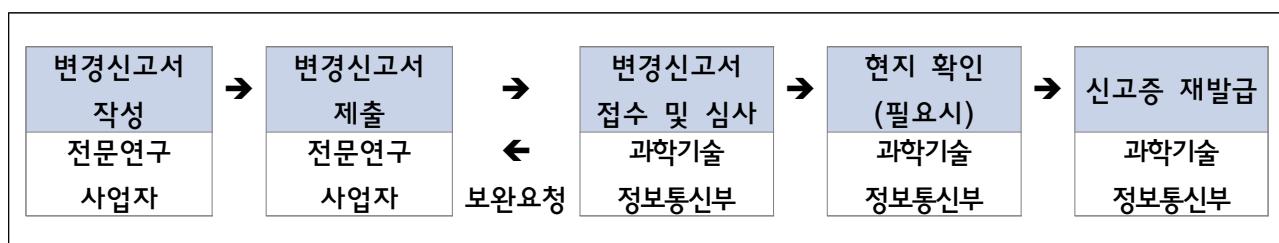
- 1)상호 또는 명칭, 2)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주된 영업소 소재지, 4)대표자, 5)신고업종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관리시스템(regist.rndia.or.kr)에서 신청

□ 변경신고 절차 및 기간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된 신고증 재발급



□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변경신고사항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업체명	
소재지	① 변경신고서(별지 제7호) ② 신고증 원본(등기우편 발송) ③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명	
신고업종	
비 고	“신고업종” 변경시 전문연구사업자 사업명세서(별지 제5호) 추가 제출

2. 갱신신고

□ 갱신신고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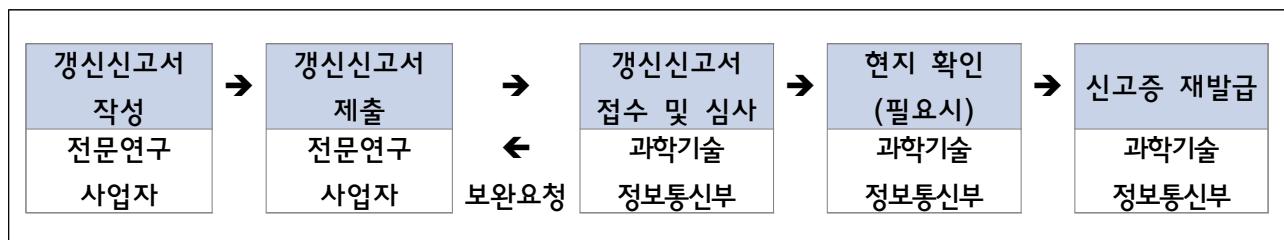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유효기간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인 전문연구사업자

□ 갱신신고 방법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관리시스템(regist.rndia.or.kr)에서 신청

□ 갱신절차 및 기간

- 처리기간 :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보완요청기간 불산입)



- 갱신신고 유효기간 : 기존 신고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3년

□ 갱신신고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① 갱신신고서(별지 제8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 개요(별지 제2호)	—
③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전문인력 재직 증명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④ 연구기자재 명세서(별지 제4호)	연구기자재 증빙 사진
⑤ 사업 명세서(별지 제5호)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매출장, 연구산업 매출 및 실적 증빙 계약서(협약서)
	연구장비·재료 자체 개발 입증서류 (지자권,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 등) (연구장비·연구재료에 한함)

3. 과태료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개별 기준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75	85	1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50	70	100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50	70	100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증감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의 증감 구분	증감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 제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시정 및 해소 노력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그 밖에 위반행위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부록

1. 연구산업진흥법

연구산업진흥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 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 · 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 · 유지 · 보수 하는 산업
 -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2. “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 ·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3.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연구장비성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장비의 보급 촉진 및 정부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평가기관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절차·기준 및 평가 결과의 표시,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2.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

3.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①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구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제1항과 관련한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협회의 설립)**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그 밖에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 제15조(보고 및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지정 요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회 또는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협회 또는 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8075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기업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로 본다.

제3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 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1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산업의 범위)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연구산업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연구산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요·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의 매출 현황 및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일시·대상, 실태조사 목적·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문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1) 「대학설립 · 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 · 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 · 기능 분야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이나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에 설치된 공간은 제외한다)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갖출 것
 - 다. 연구사업자의 총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관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관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1)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 2) 해당 연구관리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연구사업자의 총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장비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장비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나. 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 주변시스템 또는 부품을 1개 이상 개발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장비, 주변시스템 또는 부품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재료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재료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나. 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1개 이상 개발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재료나 소재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문연구산업 중 시험 · 검사 및 분석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나. 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
 - 다. 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
 2. 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 · 보수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

나. 연구장비 유지 · 보수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일 당시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연구사업자(이하 “신규연구사업자”라 한다)로서 제1항제1호다목 · 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1호다목의 매출액 요건, 제1항 제3호나목 · 다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 · 다목의 개발 · 납품 실적 요건이나 제2항제2호나목의 유지 · 보수 실적 요건(이하 이 항에서 “매출액등실적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규연구사업자의 매출액등실적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연구사업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할 때까지 매출액등실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문연구산업 또는 연구관리산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매출액을 증명할 것
2. 연구장비산업(연구장비 유지 · 보수업은 제외한다) 또는 연구재료산업의 경우: 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과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납품 실적을 증명할 것
3. 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 · 보수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유지 · 보수 실적을 증명할 것

제6조(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신고의 보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연구사업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대표자
5. 신고업종
6. 그 밖에 전문연구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 ④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9조(신고의 갱신)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③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한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절차
2.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3.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별 기준
4.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별 적합성

제1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에 적합한 조직
2. 제1호의 조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5명 이상
 - 가.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및 시험 공간
4.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5. 그 밖에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연구산업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을 것
2.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할 것
3. 연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4. 지역의 주요산업과 연구산업이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5. 연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더라도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하는 지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목적
3. 연구산업진흥단지의 관리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산업진흥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연구산업진흥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해당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산업협회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3.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16조(연구산업협회의 설립·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이하 “연구산업협회”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5. 창립회의 회의록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③ 연구산업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변경을 의결해야 하며, 그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연구산업협회는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에 관한 법·제도 개선의 건의
2. 연구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연구산업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8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②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2.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3.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4.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產學研) 협력 지원
5.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행사 지원
6.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0조(보고·제출의 요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 연구사업자, 연구산업협회,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 등에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연구산업통계의 작성·관리
2. 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갱신신고의 접수 및 확인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사
4.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
5.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산업협회
2.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2063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한다.

별표 2 비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정보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으로 한다.

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사)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나목1)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⑪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⑫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⑬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1호, 2021. 10. 21.,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전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5. 그 밖에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연구장비 세부 사양서
 2. 연구장비 취급 설명서
 3.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제안서
 4. 그 밖에 평가기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평가기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해당 연구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4.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6.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칙 <제81호, 2021. 10. 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식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관리시스템(regist.rndservice.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업체명 (홈페이지)	(기업명)	개업 연월일
	대표자명 (성별/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①소재지 1. 2.		전화번호	팩스번호
②총 자산 (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④기업 유형
③신고업종 (표준산업분류)	1. ()	2. ()	[] 대기업 [] 법인사업자 [] 중기업 [] 개인사업자 [] 중견기업 [] 협동조합 [] 소기업 [] 기타
⑤신고사항(직전 4분기)			

※ 다만, 연구장비나 연구재료 개발 실적은 개업일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총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 항	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총매출액	신고업종 분야 매출액	총매출액	신고업종 분야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		
개발 실적	유지·보수 실적	납품 실적	개발 실적	납품 실적
건	건	건	건	건
⑥주 요 사업내용	1. 2. 3.			
⑦직원 현황	종사자 총수 명	⑧전문인력 수 명	⑨연구기자재 수 (주문연구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종 전
	전체	[]소유 []임대	면적 m ²	
건물 형태	연구전용공간(주문연구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면적 m ²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p>신고인 제출서류</p> <p>1.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주문연구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5. 연구전용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주문연구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계약서 등 발생할 매출액, 납품 실적, 유지·보수 실적을 증명할 서류나 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일 당시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연구사업자가 매출액 요건, 개발·납품 실적 요건, 유지·보수 실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 해당합니다)</p>	<p>수수료 없음</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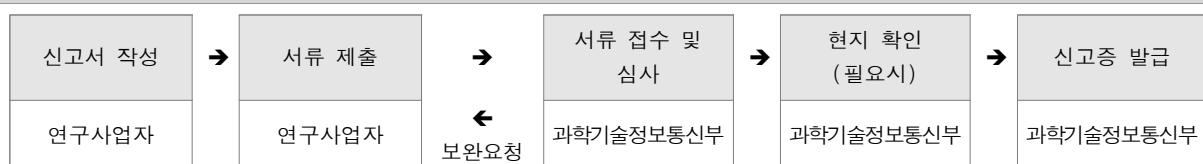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 작성방법

1. ①의 “소재지”란의 작성사항 “1”에는 기업의 주된 소재지를 작성하고 “2”에는 부소재지를 작성합니다(지점이나 부소재지가 없다면 “2”란은 비워 놓습니다).
2. ②의 “총자산(자본금)”란의 총자산에는 신고연도의 자산 규모와 자본금을 작성합니다.
3. ③의 “신고업종”란에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여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주된 업종을 “1.”에 작성하고, 부업종을 “2”에 작성합니다(한 가지 업종만을 영위할 경우 “1”에만 작성합니다). “표준산업분류”란은 기업이 신고하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에 맞추어 5자리 코드를 작성합니다.
4. ④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⑤의 “신고사항”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에 해당하는 난에 최근의 연간 실적을 작성합니다(다만,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란은 신고업종이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6. ⑥의 “주요 사업내용”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예: 연구개발용역,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등)
7. ⑦의 “직원 현황”란에는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작성합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8. ⑧의 “전문인력 수”란에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구산업별 인력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를 작성합니다.
9. ⑨의 “연구기자재 수”란에는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의 수를 작성합니다(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주문연구산업인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의 연구기자재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 두 가지 업종을 신고[예시: 공학 연구개발업(주문연구산업), 광학·전자영상장비 개발업(연구장비산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업종별 신고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신고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주문 연구 · 연구 관리	①연구개발 서비스 ②판매처
	③향후 계획
연구 장비 · 연구 재료	④개발제품 ⑤판매처
	⑥향후 계획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二〇二〇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작성방법

1. ①의 “연구개발서비스”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주된 연구개발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예시: 비임상시험, 빅데이터 분석·처리, 기술 이전·거래 지원, 아이피(IP) 관리 등].
 2. ②의 “판매처”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의 주요 판매처를 작성합니다.
 3. ③의 “향후 계획”란에는 신규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사업 분야 확장,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산학연(產學研) 협력 등 전문연구사업자의 향후 계획을 작성합니다.
 4. ④의 “개발제품”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현재 개발하여 남품한 연구장비 또는 연구재료의 개발 배경 및 경과, 용도·사양, 우수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해당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으로 신고하려는 연구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 연구장비의 종류, 유지·보수 범위 및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5. ⑤의 “판매처”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개발한 제품(“연구장비 유지·보수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말합니다)의 주요 판매처를 작성합니다.
 6. ⑥의 “향후 계획”란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고도화,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산학연 협력 등 전문연구사업자의 향후 계획을 작성합니다.
- ※ 두 가지 업종을 신고[예시: 공학 연구개발업(주문연구산업), 광학·전자영상장비 개발업(연구장비산업)]하는 경우에는 신고업종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 ※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조직도

① 전문인력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卷之三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인력의 최종 학교 및 최종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영문 또는 국문(공증) 졸업증명서 사본을 말합니다] 2. 전문인력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3. 전문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말합니다)
------	--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작성방법

1. ①의 “전문인력”란에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구산업별 인력요건을 갖춘 인력의 현황을 작성합니다.
2. ②의 “직위”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부여한 직위 또는 직급(예: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을 작성합니다.
3. ③의 “소속 부서”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소속 부서명(예: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작성합니다(다만, 신고기업이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어도 됩니다).
4. ④의 “최종 학교” 및 ⑤의 “최종 학위”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최종 학교명 및 최종 취득학위를 작성합니다.
5. ⑥의 “전담업무”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이 전담하고 있는 연구산업 관련 업무를 작성합니다.
6. ⑦의 “자연계인력 해당 여부”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이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합니다.
7. ⑧의 “국가기술자격”란에는 해당 전문인력이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를 작성합니다.

※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일련 번호	품명	모델명	단가 (백만원)	수량	제작회사 (국명)	①설치장소	도입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연구기자재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사진
------	----------------------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 작성방법

1. 해당 서식은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주문연구산업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신고기업의 연구공간 내에 위치하며, 연구산업과 관련된 연구기자재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구입단가가 높은 순서로 작성합니다.[사무책상, 팩스, 전화기,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기기와 서버(Server), 허브(Hub)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연구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①의 “설치장소”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설치된 장소의 명칭(예: 분광분석실, 동물실)을 적습니다.
※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주문연구산업 ·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명세 (직전 4분기간)

①주문연구산업	주문연구산업 매출액(A)	백만원
	기타 매출액(B)	백만원
	전체 매출액(A+B)	백만원
②연구관리산업	연구관리산업 매출액(A)	백만원
	기타 매출액(B)	백만원
	전체 매출액(A+B)	백만원

연구장비산업 · 연구재료산업 실적 명세

③연구장비산업	개발 실적 (개업일부터 신고 시점까지)	건
	유지 · 보수 실적 (직전 4분기간)	건
	납품 실적 (직전 4분기간)	건
④연구재료산업	개발 실적 (개업일부터 신고 시점까지)	건
	납품 실적 (직전 4분기간)	건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p>첨부서류</p> <p>1.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2. 매출장 3. 연구산업 관련 매출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협약서 등 4. 지식재산권,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 등 연구장비나 연구재료의 자체 개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장비산업 또는 연구재료산업만 해당합니다)</p>

전문연구사업자 사업명세서 작성방법

1. ①의 “주문연구산업” 란의 “주문연구산업 매출액”에는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개발 용역, 연구과제 협약, 기술 관련 라이선스 제공, 시험분석 등 주문연구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2. ②의 “연구관리산업” 란의 “연구관리산업 매출액”에는 전문연구사업자의 연구기획 용역, 연구과제 협약, 시장 조사, 특허 분석, 디자인 개발 등 연구관리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 ③의 “연구장비산업” 란의 “개발 실적”에는 개업일부터 신고 시점까지 자체 개발한 연구장비(주변시스템, 부품 포함)의 수를 작성하고, “납품 실적”에는 해당 연구장비를 납품한 실적 건수를 작성합니다(다만,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신고업종이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실적만 작성합니다).
 4. ④의 “연구재료산업” 란의 “개발 실적”에는 개업일부터 신고 시점까지 자체 개발한 연구재료의 수를 작성하고, “납품 실적”에는 해당 연구재료를 납품한 실적 건수를 작성합니다.
- ※ 두 가지 업종을 신고[예시: 공학 연구개발업(주문연구산업), 광학·전자영상장비 개발업(연구장비산업)]하는 경우에는 신고업종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고번호 제 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1. 업체명 :

2. 대표자명 :

3. 소재지 :

4. 신고업종 :

위 업체는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신고인

①신고번호		②업체명	
③대표자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④소재지			

변경신고사항

⑤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구분	변경신고사항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시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업체명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원본 1.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원본 2. 변경 후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명세서
	소재지	
	대표자명	
	신고업종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업체명	1.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2. 변경 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소재지	
	대표자명	
	신고업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 작성방법

- ①의 “신고번호”란, ②의 “업체명”란, ③의 “대표자명”란, ④의 “소재지”란에는 해당 업체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에 작성된 내용을 작성합니다.
- ⑤의 “변경항목”란에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전문연구사업자 간신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업체명 (기업명) (홈페이지)			개업 연월일	
대표자명 (성별/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①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1.				
2.				
②총 자산 (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④기업 유형	
③신고업종 (표준산업분류)	1. ()	2. ()	[] 대기업 [] 법인사업자 [] 중기업 [] 개인사업자 [] 중견기업 [] 협동조합 [] 소기업 [] 기타	
⑤신고사항(직전 4분기)				
※ 다만, 연구장비나 연구재료 개발 실적은 개업일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총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총매출액	신고업종 분야 매출액	총매출액	신고업종 분야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		
개발 실적	유지·보수 실적	납품 실적	개발 실적	납품 실적
건	건	건	건	건
⑥주요 사업내용	1. 2. 3.			
⑦직원 현황	종사자 총수 명	전문인력 수 명	⑧연구기자재 수 (주문연구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총
건물 형태	전체	[]소유 []임대	면적 m ²	
	연구전용공간(주문연구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면적 m ²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신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주문연구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5. 연구전용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주문연구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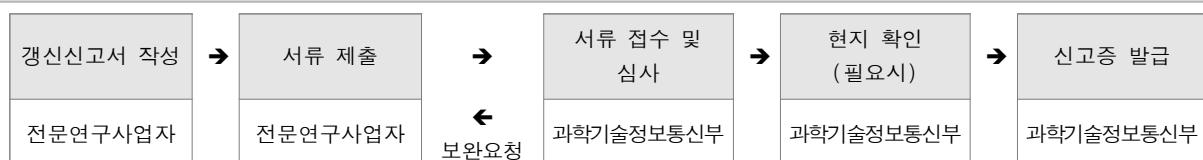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전문연구사업자 간신신고서 작성방법

1. ①의 “소재지”란의 작성사항 “1”에는 기업의 주된 소재지를 작성하고 “2”에는 부소재지를 작성합니다(지점이나 부소재지가 없다면 “2”란은 비워 놓습니다).
2. ②의 “총자산(자본금)”란의 총자산에는 간신신고연도의 자산 규모와 자본금을 작성합니다.
3. ③의 “신고업종”란에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여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주된 업종을 “1”에 작성하고, 부업종을 “2”에 작성합니다(한 가지 업종만을 영위할 경우 “1”에만 작성합니다). “표준산업분류”란은 기업이 신고하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에 맞추어 5자리 코드를 작성합니다.
4. ④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⑤의 “신고사항”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에 해당하는 난에 최근의 연간 실적을 작성합니다(다만,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란은 신고업종이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6. ⑥의 “주요 사업내용”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예: 연구개발용역,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등)
7. ⑦의 “직원 현황”란에는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작성합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8. ⑧의 “전문인력 수”란에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구산업별 인력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를 작성합니다.
9. ⑨의 “연구기자재 수”란에는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의 수를 작성합니다(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주문연구산업인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의 연구기자재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 두 가지 업종을 신고[예시: 공학 연구개발업(주문연구산업), 광학·전자영상장비 개발업(연구장비산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업종별 신고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신고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022년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업무편람

2022년 3월 인쇄

2022년 3월 발행

발행처 : 한국연구산업협회 (02)779-9071

인쇄 : 영일문화사 (02)2279-6235

※ 본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함